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0
----------	-----

2023. 8. 3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18.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8. 31.)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개념 등을 명확화하고 예산편성 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사업범위를 구체화(안 제4조)

나. “차례에 한정하여”를 “차례만”으로 변경하여 문장의 뜻을 명확화(안 제7조)

다. “공개경쟁시험”을 “공개경쟁”으로 변경(안 제10조)

라. 「지방자치법」 준용조항을 “125조”에서 “140조”로 변경함(안 제15조)

마.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기간을 사업연도 “1개월 전까지”에서 “3개월 전까지”로 변경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도모(안 제16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강남복지재단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7. 21. ~ 2023. 8.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조례 용어 중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고,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기를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조정하며,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됨.

2 사업명칭 변경(안 제4조)

- 강남구 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사업 범위를 현행 조례 제4조1)에서 명시하

-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 사업(장학사업 포함)
 - 2.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 사업
 - 3. 복지시설 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 4.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 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고 있는 바, 이 중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복지시설’이라 함은 복지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말하는 바, 사회복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라고도 함.
 - 통상 사회적 약자(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빈민 등)들을 위한 시설만을 복지시설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지만, 도서관이나 공원, 학교, 기차역 등의 공공시설 역시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은 위와 같은 용어상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2조2)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바, 집행부는 법률 용어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상위법을 준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 현행 조례상 제4조제2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명시한 바, 법률과 조례상 용어 차이

-
- 6.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
 - 7. 복지관련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운영
 - 8. 국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지원
 -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용어 사용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시기 조정(안 제16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과 제2항3)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그에 따른 예산이 성립되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금번 개정안은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전 1개월전(매년 11월말)에서 3개월전(매년 9월말)로 조정하는 내용임.
- 서울시 자치구 중 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는 9개 자치구이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또는 승인) 시기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표> 복지재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또는 승인)시기

구 분	1개월전	2개월전	3개월전
자치구명	강남, 용산	구로, 강서, 노원, 양천	광진, 동작

<표> 복지재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승인 구분

구분	제출	승인
자치구명	강서, 용산, 광진, 노원, 동작, 양천	강남, 구로

-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집행부는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 준비 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단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시기를 3개월전(9월말)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함.
- 검토하건데 ① 개정안에 따르면 9월말까지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8월말에서 9월초순까지 재단은 준비과정을 마치고, 9월 중순 재단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금번 개정안에 따라 재단은 2024년 예산안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임.

※ 재단은 정관규정에 따라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확정하여 이를 11월말까지 구청장 승인을 얻는 과정인 바, 이에 따라 재단 이사회를 통상 매년 10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개최하고 있음.

-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단은 정기 재단이사회 개최시기를 종전 10월말에서 9월말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집행부는 재단의 예산 편성 시기를 집행부 일정과 맞추는 편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금년 2월 재단이 의회(제309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자료를 보면 23년 수입예산에서 집행부 출연금(6억7천만원)은 14.6%를 차지하는 반면에 후원금 수익(25억5천만원)은 56.0%에 달하고 있는 바, 재단은 출연금 이외에 후원금 세입 추계 및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집행부 일정과 다른) 일정 확보 필요성 등을 신중히 심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집행부는 금번 개정안에 대해 재단과 ‘합의’했다고 하나, 행정법상 ‘합의’는 실질적으로 ‘동의’로 해석하는 바, 당사자간 실질적 논의를 통한 합의과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하겠음.

※ 별도의 회의 자료 등은 없고, 집행부의 재단에 대한 ‘공문’ 하달을 통해 재단측이 금번 조례 개정 사항을 인지했다고 함.

- 결론적으로 금번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기 조정안은 상위법령과 관련 자치구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개정안의 준비 과정을 보면 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가장 큰 영향력을 집행부가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과 ② 집행부가 임원 임명권 등

의 행사를 통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기 조정과 관련한 합의과정이 보다 충실히 진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시급성 등에 문제가 없다면 재단측의 일정 변경에 따른 업무상 과중과 사전 절차 준비 등을 고려한 개정안 시행 시기 조정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의 다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 법령 준용 조항 변경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230
-----------	-----

제출연월일 : 2023. 8. 18.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복지정책과

1. 제안이유

- 가.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개념 등을 명확화하고 예산편성 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다.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조항 변경내용 적용

2. 주요내용

- 가.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사업범위를 구체화(안 제4조)
- 나. 차례에 한정하여를 차례만으로 변경하여 문장의 뜻을 명확화(안 제7조)
- 다. 공개경쟁시험을 공개경쟁으로 변경(안 제10조)
- 라.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조항 125조에서 140조 변경에 따른 적용 명시(안 제15조)
- 마.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기간을 사업연도 1개월 전까지에서 3개월 전까지로 변경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도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강남복지재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1. ~ 2023. 8.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복지관련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운영”을 “복지관련 시설 운영”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차례에 한정하여”를 각각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 중 “공개경쟁시험”을 “공개경쟁”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2. (생략)</p> <p>3. <u>복지시설</u> 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p> <p>4. ~ 6. (생략)</p> <p>7. <u>복지관련시설</u>, 자원봉사센터 등 <u>운영</u></p> <p>8.·9.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임원) ①·② (생략)</p> <p>③ 이사장은 구의회 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u>차례에 한</u> <u>정하여</u>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p> <p>④ (생략)</p> <p>⑤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u>차례에 한정하여</u>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p>	<p>제4조(재단의 사업) ①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사회복지시설</u> ----- -----</p> <p>4. ~ 6. (현행과 같음)</p> <p>7. <u>사회복지시설</u>----- -- <u>복지관련 시설 운영</u></p> <p>8.·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차례만</u>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차례만</u> ----- ----- -----.</p>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신규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직원) -----

공개경쟁-----

-----.

제15조(사업연도) -----
--- 「지방자치법」 제140조---

-----.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

----- 3개월 -----
-----.

-----.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의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7급 홍윤정(02-3423-5765)